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47호 2024. 9. 6.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○ 남원시 공고 제2024-1657호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1

회 람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4

남원시공고 제2024-1657호

「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6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1. 개정이유**

「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,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·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존속기한(안 제5조의2)

(현행) 2024년 12월 31일 (변경) 2029년 12월 31일
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6. ~ 2024. 9. 26. (20일간)**4. 의견제출**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 /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교통과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이메일(insna77@korea.kr), fax(063-620-6718) 등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(☎063-620-656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붙임 :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		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